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정보도등의 게재양식 규정 등〉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08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정보도등의 게재양식 규정	3
2. 정정보도등에 관한 알림표시 의무	7
3. 정정보도등에 관한 알림표시 등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1
※ 참고자료	
1. 매체별 언론조정 신청현황(2019~2023)	16
2.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18.

다. 회 부 일 : 2024.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동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언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 복제 또는 재생산됨에 따라 언론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제3항).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다.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정보도등의 게재양식 규정(안 제15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언론사등¹⁾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에 관한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② (생략)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u>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u>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 ----- ----- ----- ----- -----. ----- ----- -----.

1) 언론사등: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법 제14조제1항)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등을 수용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등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등의 방식에 대하여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일반적으로 정정보도등은 원 보도문보다 작은 크기로 보도되거나 주목도가 비교적 낮은 지면 또는 시간대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정보도등의 게재양식을 원 보도와 동일한 크기 및 분량으로 보도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정정보도등을 원 보도와 동일한 영향력을 갖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은 정정보도등의 게재 양식에 대해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언론사등이 수용할 경우 원 보도 중 정정보도등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 보도와 동일한 분량으로 보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원 보도가 재차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아 최소한의 정정·반론 보도만을 원하거나, 추후보도의 경우 청구인의 다수의 범죄혐의 중 일부만 무죄판결·불기소처분 등이 있어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정정·반론하기를 원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정보도등의 크기·분량을 일률적으로 할당해야 하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이 제한을 받게 됨³⁾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정정보도등의 크기 및 분량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⁴⁾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되 이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피해자의 정정보도등의 청구 수용률이 저조할 경우, 후속 분쟁 해결 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및 법원 소송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 증가에 따라 피해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3) 한국신문협회 및 방송사업자 등은 동일 크기·분량으로 규정한 정정보도등의 게재 양식에 관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 침해, 정정보도등의 지면으로 주요 이슈 보도가 밀릴 경우 독자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의 오보에도 원보도 분량으로 정정해야하는 것은 비례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임.

4) 제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대안으로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되, 정정보도등의 청구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보다 작게 할 수 있도록(다만, 이 경우에도 원 보도의 1/2 이상으로 하여야 함) 허용한 바 있음.

[표 1] 연도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접수건수 및 평균처리일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접수건수	3,544건	3,924건	4,278건	3,175건	4,085건
평균처리일	18.1일	19.2일	17.9일	14.8일	21.1일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동 개정안 심사 시에는 정정보도등의 청구 거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가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 분쟁 해결 절차의 적시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정정보도등에 관한 알림표시 의무(안 제17조의2)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보도·매개한 기사 등에 정정보도등 및 그 청구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17조의3(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 ① <u>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u> ② <u>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정정보도등에 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으로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⁵⁾는 정정보도등을 청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이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⁶⁾.

그러나 정정보도등의 청구사실에 관한 알림표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의무화되어있을 뿐,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정보도등이 있음에 대한 알림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이 특정 기사의 정정보도등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한편, 2023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4,085건 중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당사자인 신청 수는 2,989건(73.1%)으로, 디지털 환경에 따른 매체이용률의 증가와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다른 매체에 비해 조정 신청 수가 많은 편임.

5)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로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표 2] 2023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매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단위: 건)

총 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기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4,085 (100.0%)	388 (9.5%)	99 (2.4%)	345 (8.4%)	8 (0.2%)	218 (5.3%)	2,491 (60.9%)	498 (12.2%)	38 (0.9%)

이에 개정안은 정정보도등의 청구 사실에 관한 표시의무를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그 사실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정보도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주의 환기로 온라인상 급속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임.

[표 3] 인터넷뉴스서비스 알림표시에 관한 특칙

의무사항	현 행	개정안
“정정보도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목 및 내용상단 표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	-	(제목 및 내용상단 표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구체적으로, “정정보도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는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정정보도등의 청구는 실제 보도를 작성·간행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⁷⁾,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알림표시 의무가 없어 정정보도등의 청구 사실에 관한 표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표시의무 확대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보이고,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알리도록 하는 표시의무는 현재 인터넷뉴스의 정정보도등이 통상적으로 본기사 하단에 간략히 기재되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정보도등의 영향력을 원 보도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언론사 및 신문협회 등은 정정보도등의 내용과 관계 없이 핵심정보가 있는 제목 등에 정정보도등의 청구 표시를 강제할 경우 청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의 공신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일반 신문·방송과 달리 인터넷 신문에만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협회 및 업계의 반대와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7)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건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언론조정 청구건 4,085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청구된 건은 498건(13.4%)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3,549건은 (인터넷)신문사, 방송사, 뉴스통신사 등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되었음.

3. 정정보도등에 관한 알림표시 등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 제34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정정보도등의 게재 및 알림표시 등 의무사항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과태료) <신 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

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u>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u> 3. 4. (생략) ② <u>제1항에</u>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4.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등의 수용 이후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정정보도등의 수용 이후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과태료의 상한을 높이는 한편,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정보도등과 관련한 알람표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고충처리인 관련 사항이나 보도 원본 등의 보관의무는 언론사 자율통제 및 업무관리 차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에 불과하나, 정정보도등의 청구 수용 후 이를 게재하지 않거나, 정정보도등과 관련한 알림표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로 보고 그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이 과태료를 상향하면서 과태료를 각각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표 4] 현행 및 개정안의 과태료 규정 개요

과태료	현행	개정안
3천만원 이하	1.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 관련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2.정정보도등의 청구를 수용 후 정정보도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3.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방송, 신문, 간행물, 인터넷뉴스 등)	1.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 관련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2.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방송, 신문, 간행물, 인터넷뉴스 등)
5천만원 이하	-	1.정정보도등의 청구를 수용 후 정정보도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2.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정정보도등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정보도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상한액 상향에 대해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사업자 등은 언론자유와 공적 책

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취지에 부적합하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분야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방송법」에서는 3천만원 이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언론중재법」상 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표 5] 「방송법」 등 현행법 상 과태료 규정 개요

법률	과태료 규정
「방송법」	과태료 3천만원 이하(43개 질서위반행위) ·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신문법」	과태료 2천만원 이하(5개 질서위반행위) ·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이하 생략) 과태료 1천만원 이하(9개 질서위반행위) ·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뉴스통신법」	과태료 2천만원 이하(3개 질서위반행위) · 외국인(법인)으로부터의 출자에 대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매체별 언론조정 신청현황(2019~2023)

○ 매체별 언론조정 신청현황

(단위: 건)

연도	청구건수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IP TV	기타
2019	3,544	357	105	436	12	187	2,055	388		4
2020	3,924	384	122	465	4	247	2,102	596		4
2021	4,278	322	131	495	8	216	2,476	610		20
2022	3,175	234	75	387	6	149	1,857	450		17
2023	4,085	388	99	345	8	218	2,491	498		38
계	19,006	1,685	532	2,128	38	1,017	10,981	2,542	-	83
(%)	100.0	8.9	2.8	11.2	0.2	5.4	57.8	13.4	-	0.4

○ 인터넷뉴스서비스 세부 신청현황

(단위: 건)

연도	인터넷뉴스서비스 합계	포털	닷컴 등
2019	388	37	351
2020	596	129	467
2021	610	27	583
2022	450	27	423
2023	498	2	496
계	2,542	222	2,320
(%)	100.0	8.7	91.3

참고 2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2024.7.4.)	• (정정보도 크기) 언론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원 보도 분량의 정정보도 의무화는 방송 보도활동의 위축,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과태료부과) 방송 보도활동의 위축,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4.6.28.)	• (정정보도 크기) 정정보도 내용이 원 보도 중 일부라도 원 보도와 동일분량의 의무화는 비례성, 실효성에 문제 여지, 또한 언론사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정제도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 • (알림표시의무) 정정보도등이 게재 시 이를 기사 제목 및 내용 상단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주목도를 높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 효과 - 다만, 청구 알림표시의 경우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언론계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 • (과태료) 알림 의무 미준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 논란
한국언론재단 (2024.7.1.)	• (알림표시의무) 신문, 방송과 달리 인터넷신문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발생여지가 있으며, 정정보도청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알림표시를 할 경우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기사 신뢰성 훼손 우려
한국신문협회 (2024.6.28.)	• (정정보도 크기) 법률로 정정보도 등의 게재 지면 및 분량과 크기를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신문의 자율성과 편집권 침해, 정정보도 지면으로 인해 보도되어야 할 국가적 이슈 보도가 밀린다면 독자의 알권리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비판보도에 불만을 품은 특정 단체·기관의 악의적 이용으로 보도활동 위축, 일반보도와 지면보도가 분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신문에 대한 차별적 규제 • (정정보도 표시) 핵심정보가 있는 제목 등에 정정보도 표시를 강제할 경우 보도의 공신력을 크게 저하 • (정정보도청구 알림표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는 기사를 잠재적 가해자 또는 악인(惡人)으로 낙인, 권력층에 대한 비판·의혹 보도 및 후속보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 (과태료부과) 언론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취지에 부적합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2024.7.1)	• (정정보도 크기) 당사자간 합의라는 조정제도 취지에 부적합하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침해 여지 • (정정보도청구 알림표시) 언론의 문제제기 기능 위축, 비판보도에 대한 진위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낙인 효과 등 부작용 • (정정보도 표시) 이중 규제로 과잉입법 • (과태료부과) 언론중재법 취지에 부적합하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위축
-----------------------------	---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사업자 (SBS, TV조선, JTBC, MBN, 채널A, YTN, 연합뉴스TV) (2024.7.4.)	• (정정보도 크기) 보도의 사실왜곡 정도, 피해 정도 등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정정·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보도의 분량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정정보도 표시) 기사제공언론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 (정정보도청구 알림표시) 법원의 최종 판결 등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등의 사실을 먼저 고지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는 뉴스 시장에서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기사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보도 신뢰도에 흠집을 내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과태료부과) 언론사와 피해자의 원만한 중재로 사익과 공익을 함께 보호하는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어긋남. 또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야기해 정당한 언론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중앙일보 (2024.7.1)	•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 축소